

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

2019. 4. 11.

국토교통부

순 서

I. 현 황	1
II. 문제점 진단	2
III. 추진전략 및 세부추진과제(案)	3
IV. 이행방안 및 추진일정	9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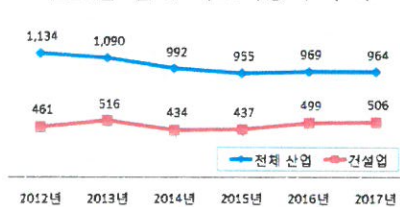
I. 현 황

1 추진배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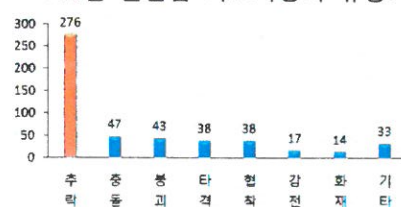
- 전체 산재는 완만하게 감소하는데 비하여 **건설사고 사망자** 수는 줄지 않고 있으며 비중도 **절반 이상**을 차지

- 후진국형 사고인 **추락 사망자**는 '17년 276명으로 전체(506명)의 **54.5%**

<연도별 산재 사고사망자 추이>



<'17년 건설업 사고사망자 유형>



2 추락 사망사고 분석

- (취약분야) 사고위치별로는 작업대 등 **가설구조물**, 규모는 20억 미만 **소형현장**, 공종은 **건축공사**, 공공보다는 **민간**이 취약

* '17년 추락사망자 : (사고위치) 가설구조물 116명(42.0%), (공사규모) 20억 미만 175명(63.4%), (공종) 건축 243명(88.0%), (발주자) 민간공사 233명(84.4%)

- (사고경위) 균형을 잃는 등 **작업자 부주의**가 70.4%, 작업대 파손 등 **작업환경 불량**이 23.4%, 안전장구 불량 등 **기타**가 6.2%를 차지

- 다만, **작업자 부주의**로 분류된 사고*는 난간 없는 외다리와 같이 헛디딤 등 **작업자의 단순 실수**를 포용하지 못하는 **작업환경**이 문제

* 지붕 위에서 균형을 잃음, 거꾸집 작업 중 발을 헛디딤, 이동 중 미끄러짐 등

⇒ **작업자의 실수까지 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계~시공 등 사업단계별로 안전장치를 강화할 필요**

II. 문제점 진단

- **경제성 위주의 사업계획**으로 **작업안전에 대한 고려 미흡**

【사례 1 : 발주자 조치 미흡】 작업자 A씨는 발판·난간 등 안전시설이 미흡한 곳에서 배관 해체 작업을 하다 4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했는데, 발주자의 설계 및 작업계획에 안전시설 누락

- **작업발판 및 난간 등 작업과정의 안전 확보**를 위한 **조치와 관련 비용**이 설계 등 **사업계획**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

- **가설(假設)구조물 설치 및 해체절차**를 무시하는 등 **현장 부실시공**

【사례 2 : 가설구조물 관리 미흡】 고층건물 외관 작업을 위해 시공자가 임시 제작한 외벽 작업발판을 고정하는 볼트가 기준보다 얇게 설치되어 발판에서 작업 중이던 작업자 3명이 추락하여 사망

- 시공을 위하여 임시 설치되는 작업발판 등 **가설구조물**은 목적물인 영구 시설물에 비해 **현장 확인, 안전성 검토 등 기술관리**가 소홀

- **작업자 실수 및 과실을 용인하지 않는 작업환경**

【사례 3 : 작업자 의식 미흡】 작업자 B씨는 난간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재래식 작업발판(강관비계) 위에서 안전벨트를 벗은 채 석재를 받아 올리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실족하여 사망

- **건설현장의 현행 안전관리체계**는 작업자의 행동에만 의존하는 **불완전한 체계**로 중심을 잃는 단순한 작업실수로 사망사고 유발

- 발판 외에도 추락방지망·안전벨트 등 이중, 삼중의 안전장치 필요

Ⅲ. 추진전략 및 세부추진과제(案)

【 추진전략 및 세부추진과제 개요 】

목표

'22년 건설현장 추락사고 사망자 50% 감축('17년 대비)

전략

취약분야에 대해 각 사업단계별로 안전장치 강화

구 분	세부추진과제
계획 단계	① 설계 시 모든 공사과정의 안전성 검토
	② 착공 前 소규모공사 안전관리계획 확인
	③ 일체형 작업발판 현장 사용 확대
시공 단계	④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의무화
	⑤ 작업허가제 도입
	⑥ 건설현장 점검을 소규모 현장까지 확대
	⑦ 가설구조물 품질관리 강화
안전문화 정착	⑧ 사망사고 건설현장의 참여주체 공개
	⑨ 對국민 홍보 강화
	⑩ 건설주체별 맞춤형 안전교육
	⑪ 건설안전 빅데이터 구축

1 계획단계

□ 설계 시 착공~완공까지 모든 공사과정의 안전성을 검토

- 설계 시 목적물의 안전성 외에 시공과정의 위험요소까지 발굴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토록 하고, 미 이행 시 과태료('19.7. 건진법 시행령)
- 민간공사도 단계적으로 의무화 추진('20년, 건진법 개정)
- 발주자는 계획·설계·시공단계에서 작업자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 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시공자에게 제공('20.1. 노동부 산안법령 개정)
- 가설구조물 설치·해체 비용이 적정히 계상되도록 가설공사 비용 산정 지침 시달('19.4)

□ 착공 前 소규모 공사도 안전관리계획 확인

- 2층 이상 건축공사 시 인허가기관은 가설·굴착공사 등에 대하여 감리가 검토한 시공계획의 안전성을 확인·승인('19.12, 건진법 개정)

건축물 규모	제출서류	계획서 포함 내용
2~9층(신설)	소규모 안전관리계획	가설, 굴착공사 등 위험공종에 국한하여 시공계획 제출 (가설·굴착 상세도면, 구조안전성 확인서 제출)
10층 이상(현행)	안전관리계획	시공위험요소·저감대책, 안전점검, 공종별 시공계획 등

□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발판(시스템 비계)의 현장 사용 확대

※ 일본의 경우, 일체형 작업발판 적용 후 추락사망자 80% 감소('95~'08, 목조주택)

- 공공공사는 「가설공사 설계·시공지침」을 시달하여 설계와 계약 (하도급 계약 포함)에 일체형 작업발판이 의무적으로 반영되게 하고,
- 경사지 등 채래식 작업발판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는 추락방지망, 안전벨트 등 이중·삼중의 안전조치 병행 후 사용('19.4. 지침 시달)

- 향후에는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등 국가건설기준의 개정을 통해 일체형 작업발판의 사용을 민간에도 확산('19.12)

- 소규모 민간현장(20억 미만)에 일체형 작업발판의 사용이 획기적으로 확대되도록 일체형 발판 공사비에 대한 건설금융 지원

<일체형 작업발판 설치현장 건설금융지원 계획(案)>

- (지원방법) 건설 관련 공제조합에서 1,600억 규모로 자금을 확보하여 초저리(1.5%, 시중 신용대출 금리 11.5%)로 일체형 발판 설치비를 지원('19.5~'22.5, 3년간)
- 5억원 건축공사(20억 미만 공사 평균 규모)의 일체형 작업발판 공사비는 1,550만원, 재래식 작업발판 공사비는 1,400만원으로 차액은 150만원 수준
- (추가 인센티브) ①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료 할인, 건설근로자 재해공제로 할인(5억공사 기준 약 100만원), ② 시공능력평가 가점 부여·상호협력평가 우대 등

- 아울러, 노동부가 실시 중인 추락방지 시설(일체형 작업발판, 추락방지망 등) 설치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도 적극 추진*

* 억원/개소 ('16) 170/1,815 → ('17) 200/2,250 → ('18) 238/2,304 → ('19) 352/4,000

- ☞ 이를 통해 추락 사망자의 60%를 차지하는 20억 미만 소규모 건축공사(2.7만개)의 절반 이상(1.4만개)에 대해 일체형 발판 설치 지원

- 대책 이행력 확보를 위해 현장별로 일체형 및 재래식 작업발판의 설치 여부를 실시간 확인*하여 사각 없는 촘촘한 관리체계 구축

* ① 노동부 지원사업 대상 + ② 공제조합 인센티브 대상 + ③ 건설협회·전문건설협회 회원사 조사 ⇒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현장 확인(분기별 조사)

- 재래식 작업발판 사용현장은 가설구조물의 안전 확보 여부 등 안전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(국토부, 노동부)

구 분	단기 정책	장기 정책	비 고
20억 미만 민간 건축공사(2.7만개) 관리체계	노동부 지원사업(4천개) + 건설금융 지원(1만개), 보증·공제로 할인(全 현장),	기술기준 개정('19.12월)으로 원칙적 사용 유도	지원대상은 최대 1.4만개

2 시공단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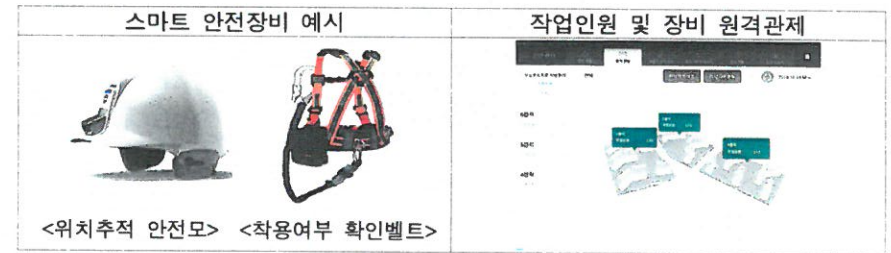
□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의무화

- 작업자가 추락위험지역에 접근하거나 안전벨트 미 착용 시 경고 토록 Io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의무화*

* '19년 시범사업 → '20년 공공 의무화(지침) → '21년 민간 의무화(건진법)

- 공사예산에 관련 비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비 항목을 추가(건진법 시행규칙, '19.6)하고, 기술개발*도 추진('19.6 예타 완료 추진)

* 「스마트 건설기술 R&D」 중 안전관제기술 개발(340억 규모, 예타 진행 중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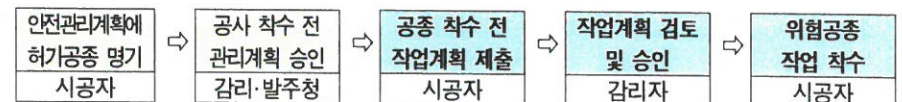


※ 현황 : 안전모·안전벨트 등 개인보호구 의무 착용(위반 시 사업주 형사처벌, 근로자 과태료)

□ 작업허가제(PTW, Permit to Work) 도입

- 가설·굴착 등 위험작업* 시 시공자는 사전 작업계획을 감리자에게 확인 받은 후에만 작업을 착수('19년 시범사업, '20년 공공 의무화)

* (싱가포르 PTW 공종) 2m 이상 고소(高所)작업, 1.5m 이상 굴착, 밀폐공간 작업 등



□ 건설현장 점검을 소규모 현장까지 확대

- 불시점검을 소규모를 포함한 전 건설현장으로 확대하고, 50억 이상 공사에 부과하던 부실별점을 모든 공사에 적용('19.7, 건진법 시행령)

- 사고 발생 시 지방국토청의 시공안전감독관이 즉시 현장 출동하여 신속히 사고조사할 수 있도록 **사법경찰권 부여**(‘19.12, 사법경찰직무법)
- 시설안전공단과 건설관리공사를 통합해 건설~유지관리까지 **시설물** **생애주기의 안전을 전담할** “(가칭)국토안전감독원” 설립(‘19.下)
- 건설업 종사 퇴직자를 지킴이로 채용해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지 않는 **120억원 미만 건설현장**에 대한 기술지원*(‘19.1~, 노동부·안전보건공단)

* 안전시설 설치·개인보호구 착용 점검·기술지도(‘19년 150명 운영, 38억원)

□ 가설구조물의 품질관리 강화 및 사전 구조안전성 검토대상 확대

- 품질시험기관 실태 점검을 실시(‘19.5)하고, 허위 성적서 발급 등 안전과 직결되는 위법 적발 시 기술자 **형사처벌**, 업체 **영업정지**
- 설치 前 의무적으로 기술사의 구조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 **가설구조물*** 대상에 **매달린 작업발판** 등 추가(‘19.7, 건진법 시행령)
- * (현행) 높이 31m 이상 작업발판, 5m 이상 거푸집 지지대, 2m 이상 흙막이 등

3 건설안전 문화 정착

□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의 참여주체를 공개

- 건설 참여주체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**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의 발주청, 감리자, 시공자를 분기별로 공개**(‘19.9~)
- * 국토부로 신고(‘19.7~)되는 사망사고 내역을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

□ 對국민 홍보 강화

- ‘19년을 추락사고 근절 원년으로 정하고,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설안전 대표 슬로건*을 선포(‘19.5) 후 TV·뉴미디어 등 전파
- * (예) “내가 떨어지면 내 가족은?”, “관심이 안전을 짓습니다” 등

- 특히, 소규모 공사를 발주하는 건축주에게 건설안전 관련 법령과 주요 안전수칙을 알리는 **안전관리 가이드라인도 마련·배포**(‘19.6)
- * 허가기관(지자체)이 착공신고 필증 교부 시 인쇄물과 전자파일(PDF)을 제공
- 국민을 대상으로 건설안전 **UCC 공모전** 등을 실시하고(‘19.6), **위험현장에 대한 국민, 작업자 신고 활성화**(‘20, 아차신고시스템 개발 중)

□ 건설주체별 맞춤형 안전교육

- 건설현장 노동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‘**4·4·4 안전점검의 날**’ 캠페인을 매월 정례적으로 추진(19.1~, 노동부)
- * 안전점검의 날(4일), 추락재해예방의 날(14일), 고위험장비 점검의 날(24일)
- 수립 대책, 개정된 안전관리제도가 현장까지 전파되도록 5개 지방 국토관리청에서 **권역별 정책·제도 설명회** 실시(‘19.5,11월 연 2회)
- **개인보호구 미착용** 등 안전수칙을 위반한 공공공사의 작업자는 소정의 **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**(‘19.4, 지침시달)
- * 美 노동산업국 건설 재해예방프로그램 : 안전수칙 위반 시 문서경고+교육 실시
- 안전수칙만 강조하기보다는 실제 피해자의 인터뷰, 생활상 등을 교육하여 작업자의 공감과 자발적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
- **안전보건교육 미 실시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**(5백→3천만원, ‘20.1, 산안법령), **개인보호구 착용 교육도 의무화**(‘18.11, 고시, 노동부)

□ 건설사고 원인의 정교한 분석을 위한 건설안전 빅데이터 구축

- 노동부 산재통계(보험금 지급 목적, 근로자 재해 위주)와 별도로 사고의 근본원인 규명이 가능한 **건설안전 빅데이터 구축**(‘18~‘20 정보망 구축 중)
- 국토부 사고시스템을 통하여 발주청, 인허가기관, 국토부가 사고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관리체계를 구축(‘19.12, 사고보고시스템 개발)

IV. 이행방안 및 추진일정

(1) 제도 개선 이전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은 우선 시행

- (공공공사)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은 신속 추진하되 **제도 개선 여부와 상관없이 공공공사부터 대책의 과제들을 우선 적용**(‘19.4)

* 일체형 작업발판, 적정공사비 반영, 2층 이상 안전계획 수립, 작업허가제 등

- 신규 착공하거나 이미 착공되었지만 발판 등 가설공사를 아직 착수하지 않은 공사는 지침 시달을 통해 대책을 즉시 적용

- 이미 가설공사에 착수한 공사의 경우 감독관이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발주청의 현장 밀착관리를 지시

- (민간공사) 민간공사는 건설협회, 전문협회, 노조 등 민간단체와 공조하여 금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의 자발적 이행을 독려(‘19.4)

* 지방국토청·산하발주청·지자체·건설관련협회·노조와 대책이행 간담회(4월중)

(2) 현장 불시점검 강화 및 교육·홍보 강화

- 대책이 현장에서 작동되도록 불시점검을 강화하여 위법 적발 시 **엄중처분** 하고, 특히 재래식 작업발판 설치현장 집중점검(‘19.5~)

* (대상) 천억 이상 현장 → 소규모 포함 전 현장, (횟수) ‘18년 20회 → ‘19년 150회

** 현지시정, 부실발점 부과 → 공사중지, 영업정지, 형사고발 등

-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이 부족한 민간공사 건축주를 대상으로 안전의 중요성을 집중 홍보하고 맞춤형 교육 실시

(3) 안전투자 확대

- 발주청이 소관 공사에 대해 일체형 작업발판 등 적절한 안전비용을 공사비에 계상토록 지시하고, 지방청에서 적정 여부 확인 점검(‘19.5)

(4) 실천과제별 추진일정

구분	추진 과제	담당	조치사항	일정
계획 단계	- 설계 시 모든 공사과정의 안전성 검토 - 설계 안전성 검토 미 이행 시 과태료 - 발주자 안전보건대장 작성 - 가설공사비 산정기준 개선	국토부 노동부 국토부	건진법 시행령 개정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 산정지침 시달	'19. 7 '20. 1 '19. 4
	- 착공 시 가설구조물 설치계획 확인 -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제도 도입	국토부	건진법 개정	'19.12
	-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의무화 - 공공공사 사용 의무화 - 민간공사 인센티브 제공 - 추락방지시설 국비지원 사업 지속 확대	국토부 국토부 국토부 노동부	설계, 시공지침 시달 건설금융지원사업 시행 '20년 예산 확보	'19. 4 '19. 5 '19.12
	-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의무화 - 단계적 의무화 - 기술개발 추진	국토부 국토부	시범사업 착수 예타 통과	'19. 8 '19. 6
시공 단계	- 작업허가제 도입 - 시범사업 실시 - 공공공사 의무화 방안 마련	국토부 국토부	시범사업 착수 연구용역 추진	'19. 6 '19.12
	- 소규모 건설현장 점검 확대 - 불시점검 확대 실시 - 부실발점 부과대상 확대 - 안전보건지킴이 운영	국토부 국토부 국토부 노동부	점검계획 수립 건진법 시행령 개정 인원 채용 및 운영	'19. 5 '19. 7 '19. 1
	- 가설구조물 품질관리 강화 - 품질시험기관 운영실태 점검	국토부	점검 실시	'19. 5
	- 사망사고 발생현장 참여주체 공개 - 사망사고 발생현장 참여주체 공개	국토부	분기별로 인터넷 게시	'19. 9
안전 문화 정착	- 對국민 홍보 강화 - 홍보캠페인 - 소규모 건축주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배포	국토부 국토부 국토부	슬로건 개발, 선포식 가이드라인 배포	'19. 5 '19. 6
	- 건설주체별 맞춤형 안전교육 - 공공공사 안전수칙 위반 노동자 의무교육 - 교육 미 실시 사업주 과태료 상향	국토부 노동부	지침 시달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	'19. 4 '20. 1
	- 건설안전 빅데이터 구축 - 건설안전정보망 구축(‘19년~단계적 가동)	국토부	사고신고시스템 운영	'19.12

참고 1 건설사고 통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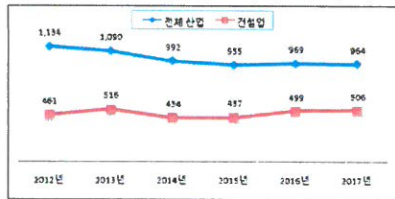
◆ (총괄) '17년 건설현장 추락 사망자는 전체 사고 사망자(506명)의 54.5%(276명)이며, 충돌이 9.3%, 붕괴가 8.5%를 차지('16년 56.3%)

<'17년 건설업 유형별 사고 사망자(출처 : 고용부)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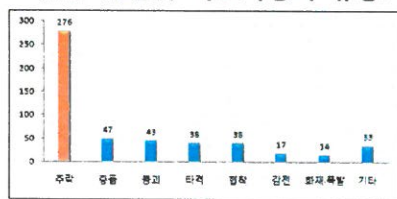
계	추락	충돌	붕괴	타격	협착	감전	화재·폭발	기타
506	276	47	43	38	38	17	14	33

* 기타 : 절단·베임·찢림, 이상온도 접촉, 빠짐·익사, 화학물질 노출, 산소결핍 등

<연도별 산재 사고사망자 추이>



<'17년 건설업 사고사망자 유형>



① (원인별) 비계, 사다리, 거푸집 등 가설구조물 문제로 발생한 추락 사망자는 116명으로 전체의 42.0%를 차지

※ 가설구조물 42% > 건물·구조물 30% > 구멍·모서리 14% > 기계류 13% 順

② (규모별) 총 공사비 2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*에서 발생한 추락 사망자 수는 175명으로 전체 추락 사망자 수의 63.4% 차지

* 17년 기준 전체 건설현장 39.7만개 중 20억 미만 건설현장은 35.7만개(90%)

③ (공종별) 건축공사 사망자는 243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88.0%이며, 신축(58.3%) 뿐만 아니라 보수·중축공사에서도 29.7% 발생

④ (발주자별) 민간공사의 추락 사망자는 233명으로 전체의 84.4%를 차지하며 공공은 지자체(17명)>공공기관(15명)>중앙부처(11명)의 순

⑤ (원인별) 작업자 부주의로 인한 추락사고가 194명으로 70.4% 차지

※ 작업자 부주의 194명(70.4%) > 작업환경 불량 65명(23.4%) > 장비 불량 8명(2.9%)

참고 2 일체형 작업발판(시스템 비계)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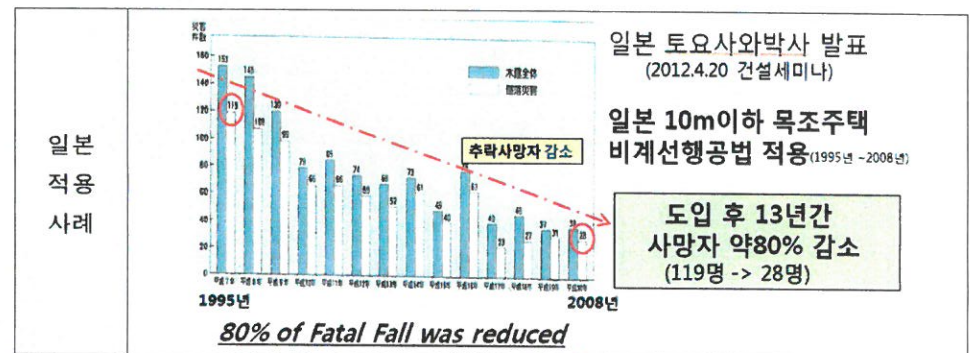
□ 작업발판(비계, 飛階) 정의

- 건설 중에 작업자 이동을 위하여 임시 설치하는 통로 구조물로 발판을 지지하는 지지대(수직/수평/경사재), 발판, 난간으로 구성

□ 일체형 작업발판(시스템 비계) 개요

- (정의) 지지대, 발판, 난간 자체와 연결 부속품을 조립형 모듈로 제작해 일체 구조로 거동할 수 있도록 만든 작업발판
- (안전성) 발판과 난간을 따로 설치하여야 하는 재래식 작업발판에 비해 구조적 안전성이 우수하고 작업자 추락예방효과도 높음

일반 재래식 작업발판(강관비계)	일체형 작업발판(시스템 비계)
강관으로 기본 틀을 조립한 후 작업발판과 난간을 설치	지지대, 작업발판 및 난간이 조립 가능한 모듈 형태로 제작되어 일체형 거동



참고 3 스마트 건설 기술개발 추진 현황

□ 사업 개요

- (기간/비용) `20~`25년(6년) / 2,174억원(국비 1,626억, 민간 548억)
- (사업목적) 건설 현장의 스마트 기술 적용 및 디지털 기반 통합 관리를 통한 “인프라 건설 혁신 및 건설산업 생태계 조성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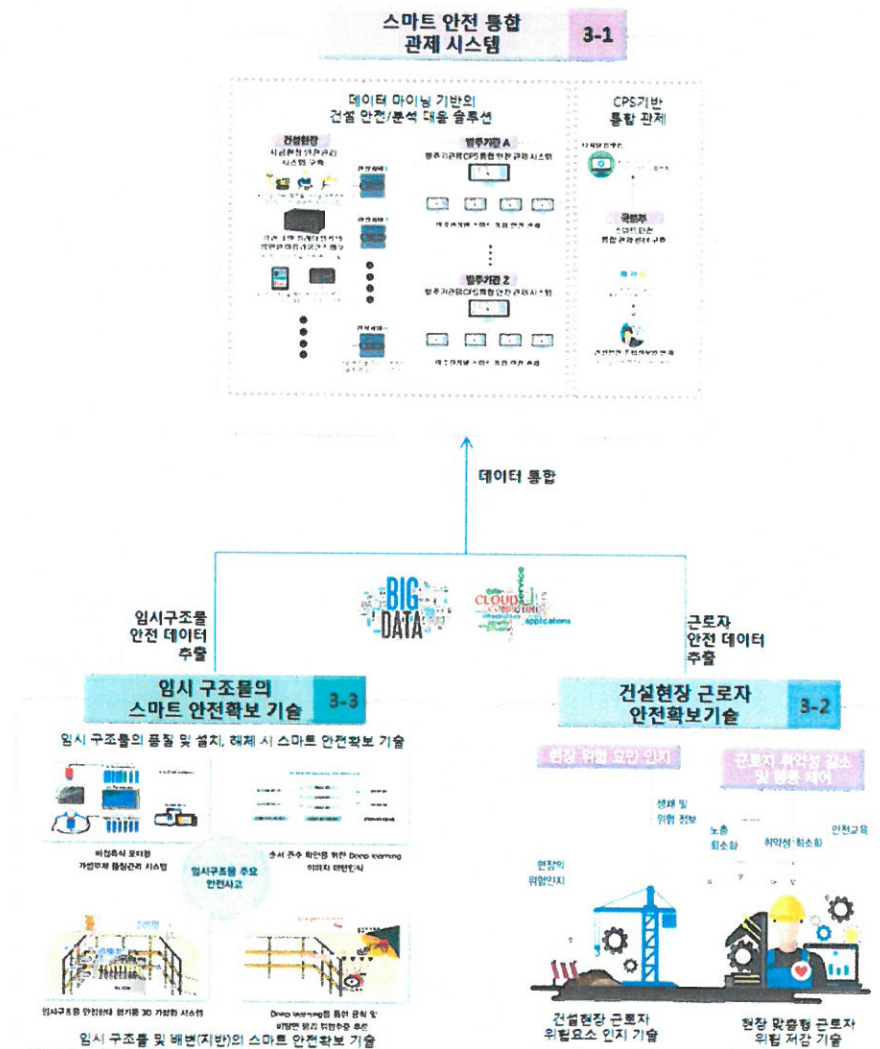
□ 사업 내용

- 건설장비 자동화 및 관제기술 : 드론·레이저스캐너를 활용하여 디지털 맵 구축, 장비 원격·자율제어, 다수 장비 실시간 관제
- 도로구조물 스마트 건설기술 : 도로구조물 디지털 설계(BIM) - 제작 - 시공 협업 지원, 원격·무인시공, 정밀 형상계측 시공
- **스마트 안전 통합 관제기술** : 구조물(가시설물) - 지반 - 장비 - 작업자 센서 및 모션 분석 기술, 실시간·예측형 안전관제 기술
- 플랫폼 개발 및 테스트 베드 마련 : 중점분야 1~3의 생성 정보를 표준화, 민·관이 공유·활용할 수 있는 지식 플랫폼 개발

□ 스마트 안전 통합 관제기술 분야 추진경과 및 계획(국비 340억)

- '18. 8 : 한국시설안전공단을 주축으로 안전분야 사업기획팀 구성
* 안전분야 건설, IT 및 디자인 등 관련 전문가 11명으로 분과 구성
- '18.10 : 본 사업기획의 기술성 및 예비타당성 평가를 대비한 관련 업계 및 기관의 사업 안전분야 참여의향서 접수
- '18.12 : 기술성 평가 통과
- 향 후 : '19.5 본 예타 평가 및 통과 시 '20년부터 사업추진

□ 스마트 건설안전 개요도



참고 4

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구축사업 개요

- (추진현황) 근거법령 마련('15.5 법 개정, '16.1 시행령 개정, '16.5 시행),
'18.11월 1차년도 사업 착수(24억), '19년 2차년도 사업예산 확보(24억)

<주요 내용(13개 과제)>

구 분	법적 근거	주요 기능	비고
설계 안전성 검토 및 관리시스템	영 제75조의2 제3항	설계안전성검토 현황 및 결과 관리, 위험요소 발굴·제공	
건설공사참여자 안전관리수준평가 및 관리시스템	법 제62조 제12항	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 및 결과 관리	
건설공사 안전점검 및 건설현장 등의 점검 관리시스템	법 제54조 제1항	건설현장 안전점검보고서 및 현장점검이력 등 관리	
안전사고(아차사고)관리시스템	(법 제67조 제1항)	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한 모바일 웹 기반의 건설 중 위험요소 신고	국민참여 신고
모바일 앱 및 모바일 건설 안전정보시스템	(법 제62조 제11항)	사용자 편의 제고를 위한 모바일 웹 기반의 건설안전 종합정보망 제공	신고편의 확보
위험요소프로파일 관리시스템	(법 제62조 제11항)	건설공사 위험요소프로파일 생성·보완	
건설공사 안전관리 정보를 이용한 정보공동활용 체계구축	법 제62조 제11항	정부, 공공기관, 대국민 등에게 건설공사 안전관리 정보 공유·개방	
건설안전정보 통합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체계 구축	(법 제62조 제11항)	타 시스템 연계 및 표준화를 통한 통합관리, 데이터 품질 확보	
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인프라 구축	(법 제62조 제11항)	건설업자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참여자에게 맞춤형 정보 제공	
안전관리계획서 검토시스템	영 제98조 제4항	검토기관별 계획서 검토 업무 확대 및 검토기관 관리	
건설기술평가관리시스템	법 제50조 제5항	사용자 범위 확대 및 타 시스템 연계로 DB구축 및 공유	
건설사고 보고 및 사고조사 운영시스템	법 제67조 제2항	건설사고 후속조치 절차 기능강화 및 사고이력 통합관리	사고신고
건설사고 사례 DB 관리 및 분석 시스템	(영 제105조 제4항)	사고발생 현황·원인 DB화 및 분석기능	통계구축

- (향후계획) 1차분 준공('19.11), 구축완료('21.11)